#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94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 · 임미애 · 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김태선

박 정・전재수・전용기

김남희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400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 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6391 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 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 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을 ""노동자"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자를"을 "노동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근로자위원"을 각각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제13호 및 제1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여성근로자"를 "여성노동자"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를 "노동자위원은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위원"을 "노동자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6조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9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7제1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12제1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1항제3호 단서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u>법률</u>	<u>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u>근로자</u> 와 사	제1조(목적) <u>노동자</u>
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	
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	
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	
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u>근로자</u> 와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u>노동자</u>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	
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u>근로자</u> 와 사	1 <u>노동자</u>
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u>근로자</u> 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u>노동자</u>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	
다.	
2. <u>"근로자"란 「근로기준법」</u>	2. <u>"노동자"란 「노동기준법」</u> -
제2조에 따른 <u>근로자를</u> 말한	<u>노동자를</u>
다.	

3.	"사용지	∤"란	「근로기준	<u> - 법</u>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
	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u>근로조건</u>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u>근로자</u>를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생 략)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u>근로자</u>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3	<u></u> 「노동기준
<u>법」</u>	
<b>.</b>	
제4조(노사협의	회의 설치) ①
<u>노동</u> 2	<u>  건</u>
	<u>노동자</u>
② (현행과 🌣	같음)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u>노동자</u>	
② <u>노동자</u>	
<u>노동자</u>	위원
<u>노동자</u>	
	<u>노동자</u>
	<u>노동자위원</u>
노동자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u>근로</u> <u>자</u>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 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u>근</u> 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u>근로자</u>의 과반 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은 노동조 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생 략)
-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지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생 략)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

<u>노동</u>
<u> 자</u>
<u>노동자위</u>
원
③
<u>노동자</u>
<u>노동자위원</u>
⑤ 노동자위원
<u> </u>
제7조(의장과 간사) ①
노동자위원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신분) ① (현행과
같음)
(2)

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	<u></u> _
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자위원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③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u>근로한</u> 시간으로	<u>노동한</u>
본다.	<u>.</u>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는 <u>근로자위원</u> 의 선출에 개입	<u>노동자위원</u>
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사용자는 <u>근로자위원</u> 의 업	② <u>노동자위원</u>
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	제11조(시정명령)
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	
반하여 <u>근로자위원</u> 에게 불이익	<u>노동자위원</u>
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	<u>노동자위원</u>
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	
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u>근로자</u>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u>노동자</u>
<u>위원</u> 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	위원

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 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정족수) 회의는 <u>근로자위</u> 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략)
- 2. <u>근로자</u>의 채용·배치 및 교 육훈련
- 3. 근로자의 고충처리
-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
  경 개선과 <u>근로자</u>의 건강증진
  5. ~ 10. (생 략)
-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

,
<u>.</u>
제15조(정족수) <u>노동자위</u>
원
제20조(협의 사항) ①
<u>,</u>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3. <u>노동자</u>
4
<u>노동자</u>
5. ~ 10. (현행과 같음)
11

制)와 그 밖어	] <u>근로</u> 지	<u>-</u> 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	관련하여
해당 <u>근로자</u>	에 대한	보상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관한 사항

- 14. 사업장 내 <u>근로자</u> 감시 설 비의 설치
-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16. · 17. (생략)
- ② (생략)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야 한다.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2. (생략)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4. 5. (생략)
-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생략)
  - ② <u>근로자위원은 근로자</u>의 요 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u>노동자</u>
12
노동자
13. 노동자
14노동자
15. 여성노동자
16. • 17. (현행과 같음)
10.·17. (원왕과 실임)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의결 사항)
세21소(위설 사망)
1. 노동자
2. (현행과 같음)
3. <u>사내노동복지기금</u>
4.·5. (현행과 같음)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동자위원은 노동자
<u>.</u>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	③ 노동자위원
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u>근로</u>	<u>노동</u>
<u>자</u> 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u>자</u>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u>근로자</u>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u>노동자</u>
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야 한다.	
약 인다.	•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 제25조(임의 중재) ①
, _ ,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 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 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 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 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 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임의 중재) ①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u>근로자위원</u> 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 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 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2.(생 략)	제25조(임의 중재) ①

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제26조(고충처리위원)
또는 사업장에는 <u>근로자</u> 의 고	<u>노동자</u>
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u>근로자</u> 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u> 노동자</u>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위원은 <u>근로자</u> 로부터 고충사항	<u>노동자</u>
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u>근로자</u> 에게 통보	<u>노동자</u>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